

「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」 통합 시행계획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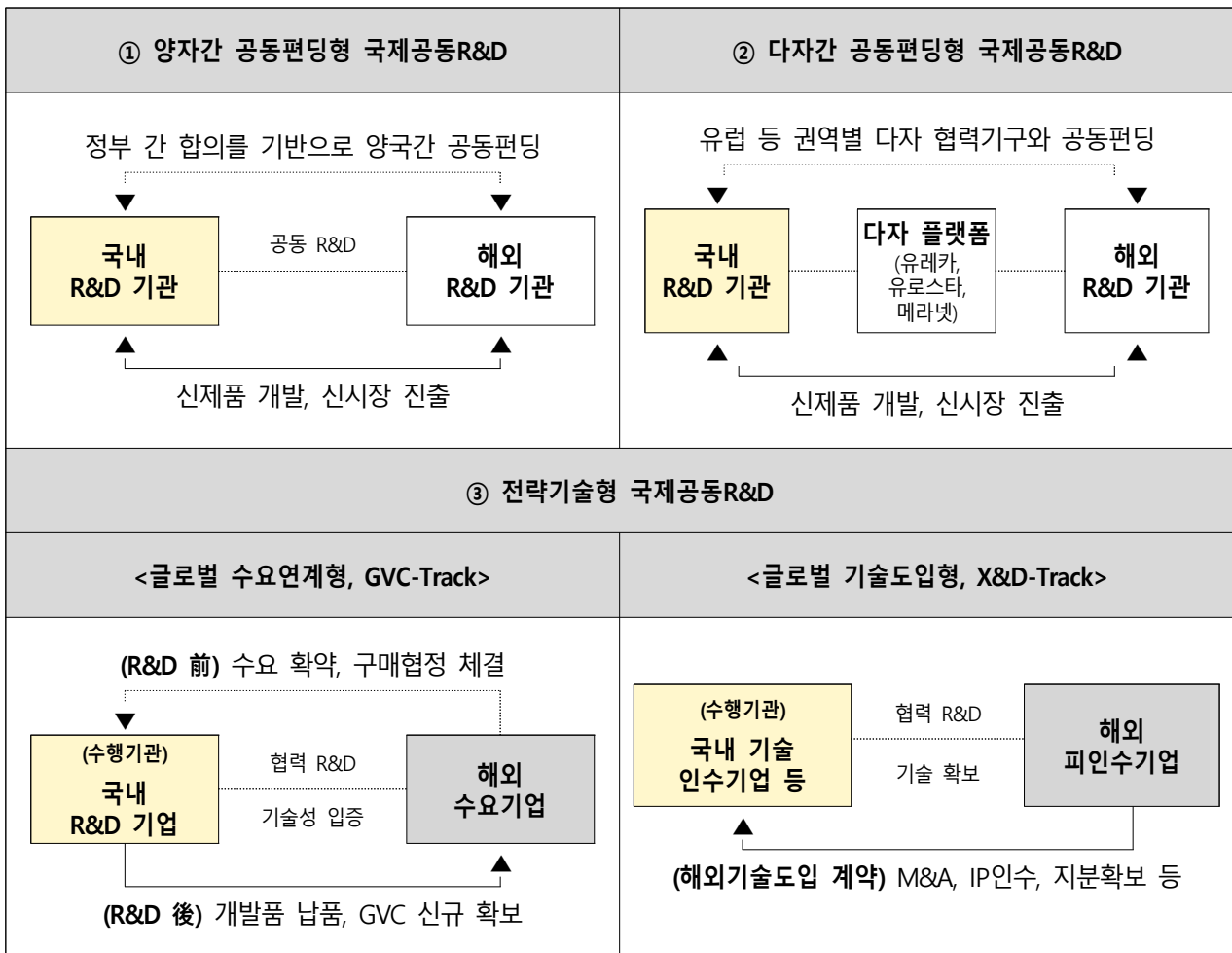
『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』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&D를 지원하는 '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'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9일
산업통상부장관

1. 사업 목적

-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&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,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

2. 사업 구분



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(GITCC)	
<협력센터>	<국제공동R&D>
<div>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</div> <div> <div></div> <div>NCC* (필요시)</div> </div> <div>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</div> <p>*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(NCC,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) :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('24년 선정)</p>	<div> <div>국내 R&D 기업 등</div> <div>공동 R&D</div> <div>해외연구기관* (협력센터)</div> </div> <p>* 협력센터: '24~'25년 선정 센터(美 MIT, 예일, 존스홉킨스, 조지아텍, 퍼듀, 獨 프라운호퍼, 加 토론토대, 英 UCL), '26년 신규 선정 센터</p>

3. 사업 내용

- ① (양자간 공동펀딩형 R&D)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*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
👉 2026년도 양자간 공동펀딩형 R&D 상세내용 본 공고문 4~8 페이지 참조

양자간 공동펀딩형 R&D 협력 국가													
① 독일	② 프랑스	③ 영국	④ 스위스	⑤ 스페인	⑥ 체코	⑦ 네덜란드	⑧ 덴마크	⑨ 캐나다	⑩ 싱가포르	⑪ 중국	⑫ 인도	⑬ 미국	⑭ 이스라엘

*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&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

- ② (다자간 공동펀딩형 R&D) 다자 R&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해당 운영 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
👉 2026년도 다자간 공동펀딩형 R&D 상세내용 본 공고문 9~16 페이지 참조

【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R&D 세부 프로그램】

프로그램	유레카(EUREKA)			유레카 - EU 공동	유럽연합(EU)
	네트워크(NETWORK)	클러스터(CLUSTERS)	글로벌스타(GLOBALSTARS)	유로스타(EUROSTARS)	메라넷(M-ERA.NET)
운영기관	유레카 사무국	클러스터 사무국	유레카 사무국	유레카 사무국	메라넷 사무국
특징	산학연 간 자유로운 공동R&D	5대 분야 중심 다국가 참여 대형 R&D 지향	유레카 비회원국 참여 공동R&D	중소·중견기업 주도 공동R&D	소재·부품 분야 특화 공동R&D
국제 컨소시엄 규모	중소형	중대형	중소형	중소형	중대형
참여국	48개국			37개국	35개국

【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R&D 참여국 현황】

유레카 참여국(47개국)	* 총 48개 회원국 중 1개국(아르헨티나) 참여 중지 중
그리스, 남아프리카공화국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대한민국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마케도니아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몰타, 벨기에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브라질, 산마리노공화국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싱가포르, 사이프러스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체코, 칠레, 캐나다, 크로아티아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	
유로스타 참여국(37개국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U 회원국(27개국)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사이프러스, 체코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 -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(6개국) 노르웨이, 이스라엘, 튀르키예, 아이슬란드, 영국, 스위스 - 기타(4개국) 한국, 캐나다, 남아프리카공화국, 싱가포르 	
메라넷 참여국(35개국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U 회원국(25개국) 오스트리아, 벨기에, 크로아티아, 사이프러스, 체코, 독일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프랑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라트비아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스웨덴,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, 불가리아, 그리스, 이탈리아 -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(5개국) 아이슬란드, 이스라엘, 노르웨이, 튀르키예, 보스니아 - 기타(5개국) 한국, 브라질, 캐나다, 남아프리카공화국, 대만 	

- ③ (전략기술형 R&D)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&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

 **2026년도 전략기술형 R&D 상세내용 본 공고문 17~18 페이지 참조**

【전략기술형 R&D 세부 프로그램(안)】

구분	주요내용
글로벌수요연계형	·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
글로벌기술도입형	·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(IP인수, M&A 등) 후,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&D를 지원하여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

*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

- ④ (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)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&D 협력 모델 마련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

 **2026년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상세내용 본 공고문 19~20 페이지 참조**

【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(안)】

구분	주요내용
협력센터	·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내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『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』설치
공동연구(R&D)	· 협력센터에서 발굴·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의 공동연구 과제

*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

양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 (Bilateral Joint Funding R&D)

※ 지원규모, 기간, 분야, 추진체계,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

1. 지원규모, 기간 및 신청자격

대상국가		지원규모	지원기간	국내(한국측)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요건	
				주관연구개발기관	공동연구개발기관
독일	AiF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제한없음	제한없음 (영리기업 참여 필수)
	2+2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제한없음 (기업+대학/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)	
미국		6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공공연구소 (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)	제한없음 (영리기업 참여 필수)
스위스	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제한없음	제한없음 (영리기업 참여 필수)
스페인		10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중소·중견	제한없음
싱가포르	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영국	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인도		2.5억원 이내/년	2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중국		2억원 이내/년	2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캐나다		2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체코		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이스라엘		최대 500만불 이내	3년 이내	중소·중견·대기업	제한없음

* 스위스의 경우, 국제 컨소시엄(국내+스위스)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(단, 스위스측 주관 기관이 "Individual Start-up(pre-market and <50 FTE)"에 부합할 경우,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참여 없이 지원 가능)

* 프랑스, 네덜란드,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(R&D)을 통해 접수

*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(www.koril.org)으로 문의

2. 사업 추진체계

○ 양자간 공동펀딩형 (미국 제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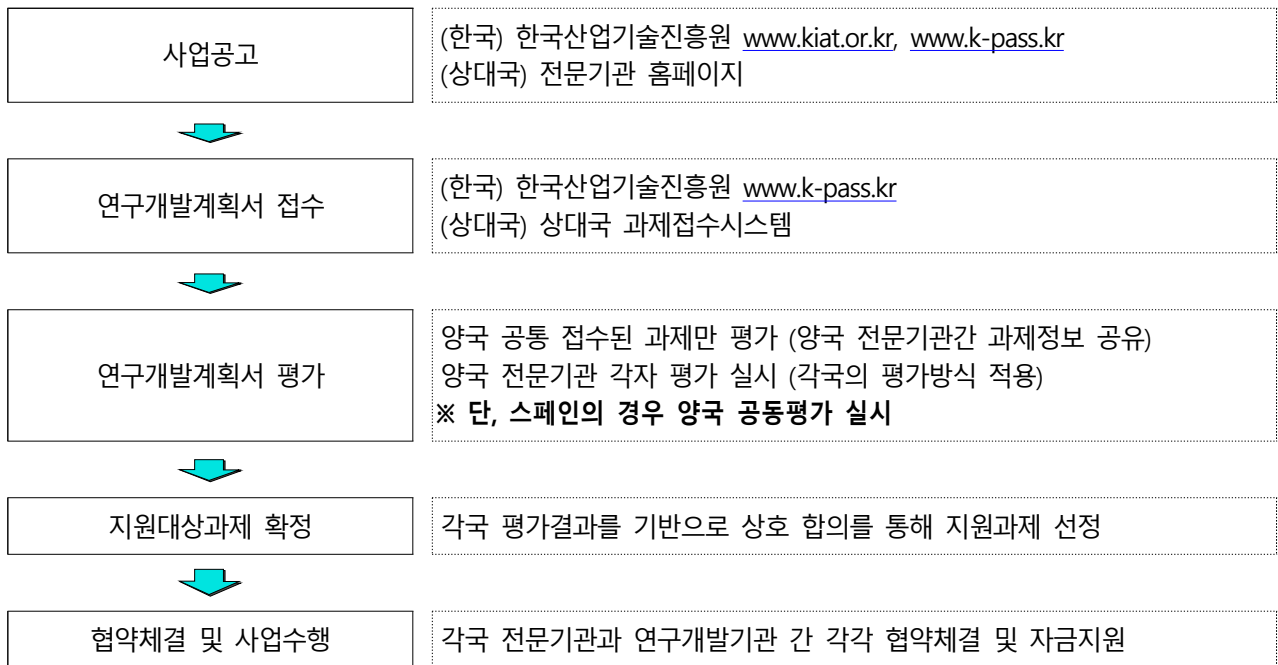
○ 양자간 공동펀딩형 (미국)



3. 지원 절차

- (양자간 공동펀딩형(미국제외))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

* 한국 컨소시움은 한국 접수처에, 해외 컨소시움은 해당국 접수처에 각각 접수 필수 (한국과 상대국의 접수 마감일 각각 확인 필요)



- (양자간 공동펀딩형(미국))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&D 기관과 공동R&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



4. 지원일정

대상국가	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독일	AiF	~'26.06.18(목) 16:00 (* 공고일 현재 국내 접수 가능)	~10월	~11월	~12월
	DLR (2+2)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미국		~'26.05.11(월) 16:00 (* 공고일 현재 국내 접수 가능)	~7월	~8월	~9월
스위스	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스페인	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싱가포르	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영국	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캐나다		~'26.06.26(금) 16:00 (* 공고일 현재 국내 접수 가능)	~9월	~9월	~10월
체코		추후 별도 안내 예정			

- * 프랑스, 네덜란드,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(R&D)을 통해 접수
- * 중국, 인도의 경우 지원여부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
- *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(www.koril.org)으로 문의

5. 유의사항

○ 과제 승인 확정 관련 유의사항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 제20조(선정평가 결과의 보고)에 의거하여,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국가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제안기관에 결과 통보함. (국내평가 결과만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하지 않음) 상대국 평가결과 도출이 지연될 경우, 국내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및 결과 통보도 순연됨.

6. 지원분야

국 가		지원 분야
독일	AiF	산업 소 분야
	DLR (2+2)	① Robotics ② Semi-conductor
미국		첨단산업 분야(반도체, 자율차, 바이오, 첨단제조·소재 등)
스위스		산업 소 분야 지원가능 (단,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) ① Biotech; Medtech, ⑤ Smart Materials / Innovative Surfaces ② Renewable Energy & Batteries ⑥ AR; VR ③ Digitalisation; Industry 4.0; IoT, AI ⑦ Hydrogen Technologies ④ Additive Manufacturing
스페인		별도 안내 예정
싱가포르		산업 소 분야
영국		별도 안내 예정
캐나다		① Advanced Manufacturing(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, advanced materials, automotive manufacturing, robotics and automation) ② Health&bio-sciences(pharmaceuticals, digital health,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) ③ Digital Technologies(AI for industry, cyber security, and smart vehicle, smart city) ④ Clean Technologies(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,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, battery-related technologies, renewable energy, and hydrogen technologies) ⑤ Quantum Technologies
체코		산업 소 분야 지원가능 (단,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) ① Future Mobility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② General Machinery and Photonics ⑦ Disaster Resilience, Response and Recovery ③ Advanced Materials ⑧ Circular Economy ④ ICT(including cybersecurity) ⑨ Semiconductors ⑤ AI

* 프랑스, 네덜란드,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(R&D)을 통해 접수

7. 국가별 홈페이지

국가	정부 부처	R&D 전문기관	홈페이지
네덜란드	MEA	RVO	https://english.rvo.nl
덴마크	DASTI	IFD	https://innovationsfonden.dk/en
독일 (AiF)	BMWF	AiF	http://www.zim.de/internationale-ausschreibungen
독일 (DLR, 2+2)	BMFTR	DLR	https://www.dlr.de/EN/Home/home_node.html
영국	DSIT	Innovate UK	https://www.ukri.org/councils/innovate-uk/
스위스	EAER	Innosuisse	https://www.innosuisse.ch/inno/en/home.html
스페인	MICIN	CDTI	http://www.cdti.es
싱가포르	MTI	Enterprise Singapore	https://www.enterprisesg.gov.sg/
캐나다	GAC	NRC	https://nrc.canada.ca/en/
체코	MIT	TA CR	https://www.tacr.cz/en/
프랑스	MEFIDS	Bpifrance	https://www.bpifrance.fr/A-la-une/Appels-a-projet-concours
이스라엘	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(KORIL)		https://www.koril.org

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 (Multilateral Joint Funding R&D)

※ 지원규모, 기간, 분야, 추진체계,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

1. 지원규모, 기간 및 신청자격

프로그램			대상 국가	지원규모 (KIAT→한국컨소시움)	지원 기간	지원자격	
						국제 컨소시움 (한국+해외) (유럽 중앙사무국 접수)	국내 컨소시움 (한국) (국내 접수)
유레카	네트 워크	일반	프로 그램 참여국	과제당 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- 참여국 2개 이상 국가,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-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준수	- 국내 컨소시움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
		주제별					
		국가별					
	클러스터	5대 분야별					
	글로벌 스타	국가별					
유레카-EU 공동	유로스타		프로 그램 참여국	과제당 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- 총괄주관(Main Partner)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* -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- 유로스타3 기타 지원조건 준수	- 국내 컨소시움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
유럽연합 (EU)	메라넷		프로 그램 참여국	과제당 5억원 이내/년	3년 이내	-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* -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-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	- 국내 컨소시움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

* (유레카) 기타 지원조건 관련, [유레카 가이드라인](#) 참조 (외부 링크)

* (유로스타) 혁신중소기업(Innovative SME) 조건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, [유로스타 가이드라인](#) 참조 (외부 링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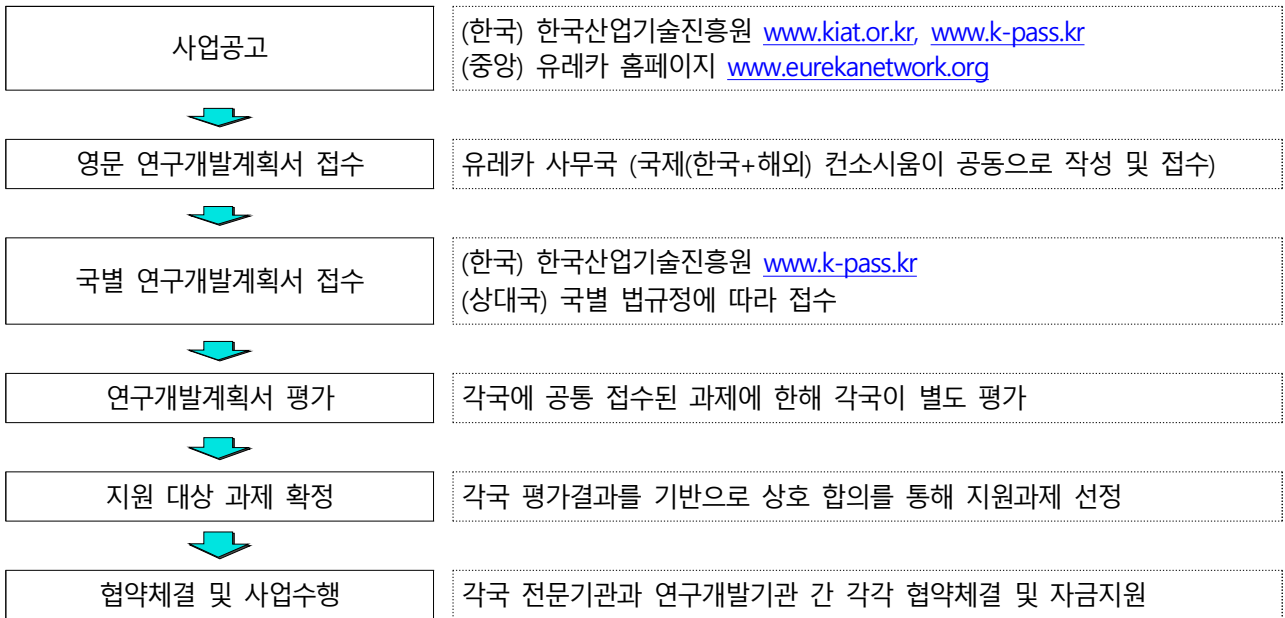
* (메라넷) 기타 지원조건 관련, [메라넷 가이드라인](#) 참조 (외부 링크)

2. 사업 추진체계



3.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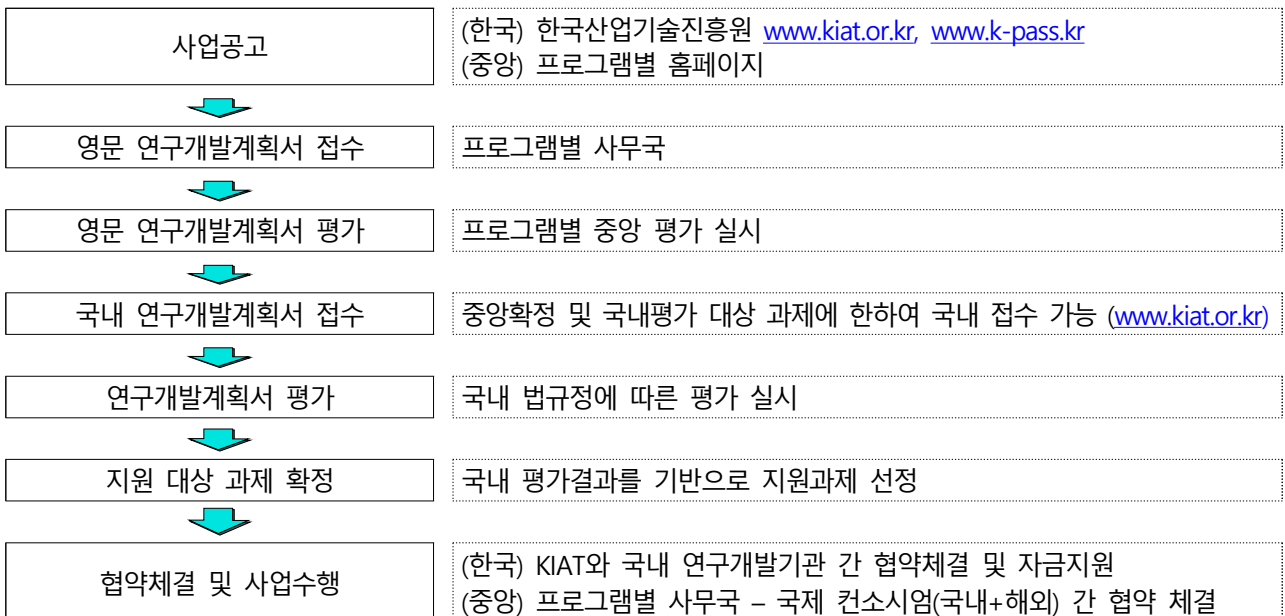
○ 유레카(네트워크, 글로벌스타) : 1회 평가 (국내평가)



*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(Total cost)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 +기관 부담연구개발비(현금, 현물 일체))와 동일하여야함

*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

○ 유레카(클러스터), 유로스타, 메라넷 : 2회 평가 (유럽중앙평가 및 국내 평가)



*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(Total cost)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 +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, 현물 일체))와 동일하여야함

*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

3-1.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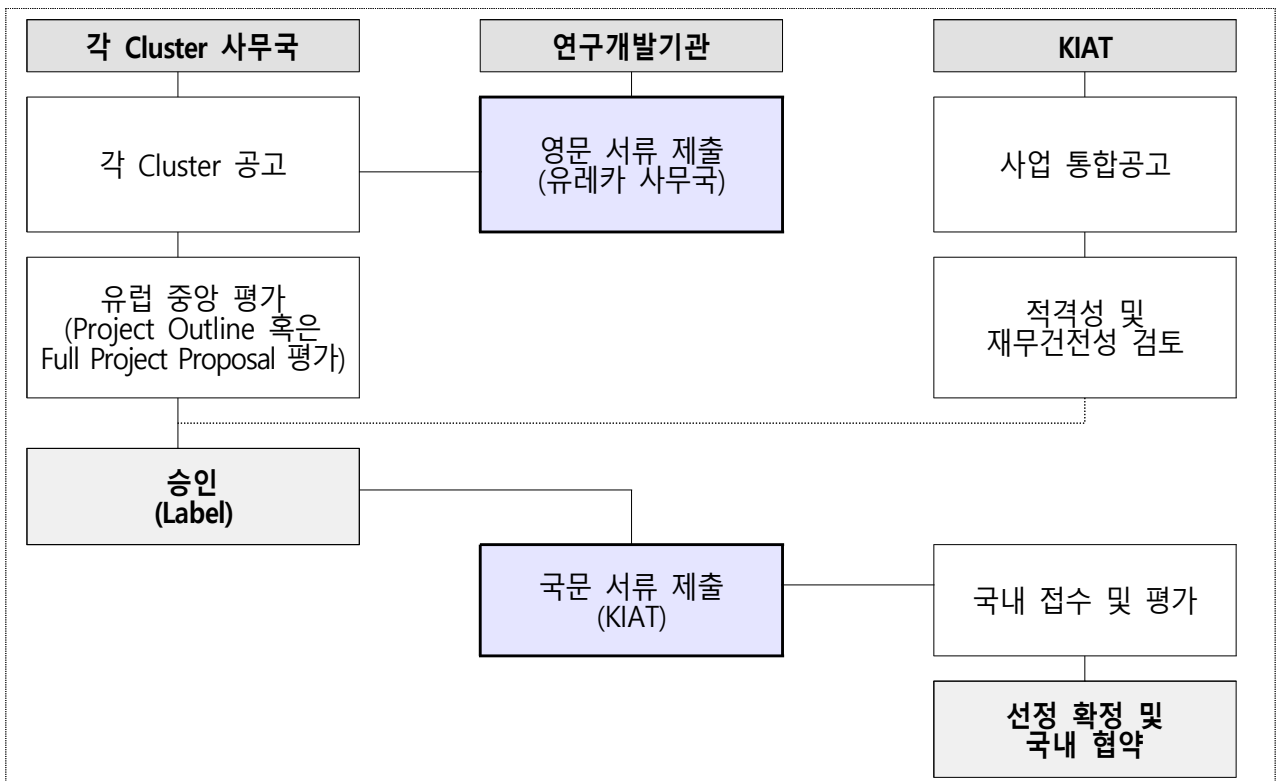
프로그램별 영문 서류 제출한 국내 컨소시엄은 접수 완료 후 사업별 담당자(공고문 38p)에게 이메일 통보 필수 (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, 접수 여부 및 실무자 연락처만 통보)

① 유레카 네트워크 (Eureka Network Projects), 글로벌스타 (Eureka Globalstars)



*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/정부에 접수해야 함

② 유레카 클러스터 (Eureka Cluster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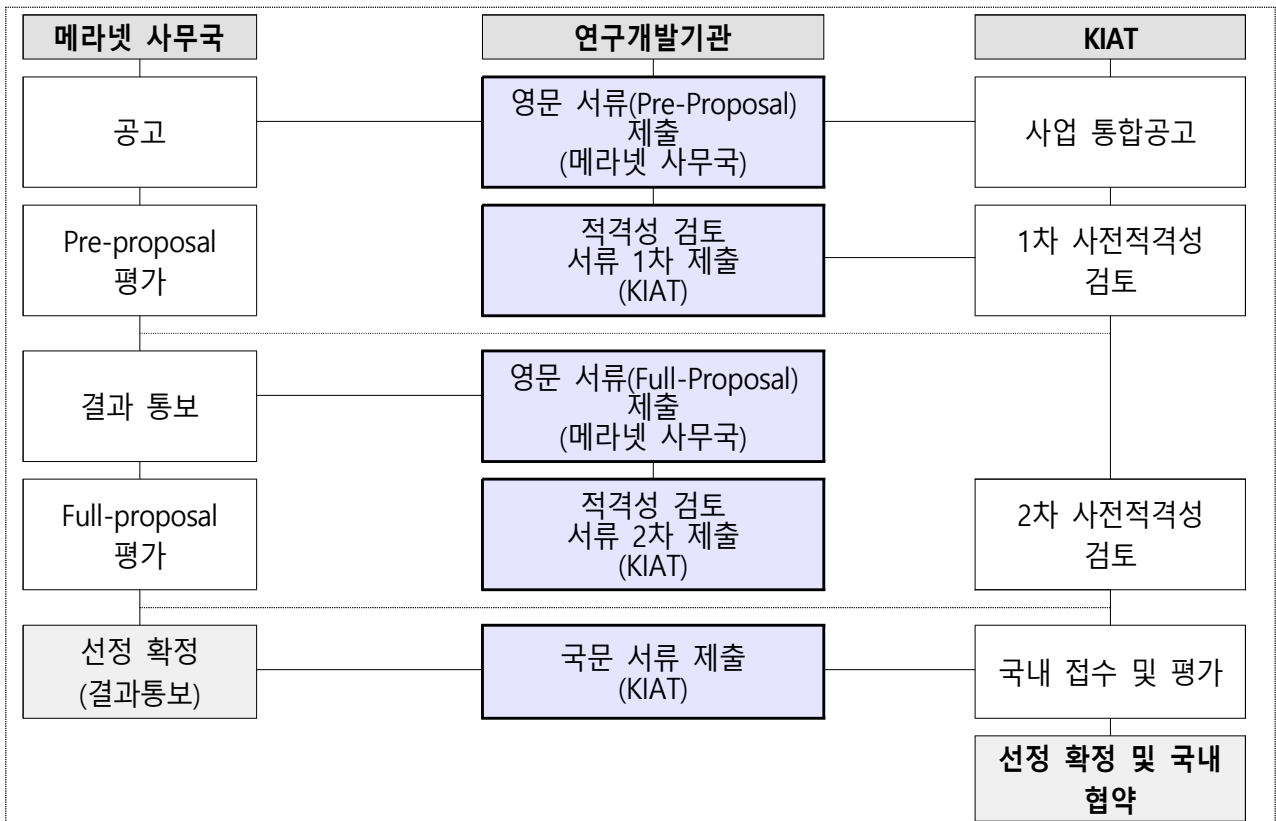
* 클러스터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최종 '승인(Label)'된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

③ 유로스타 (Eurostars)



* 유로스타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"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"인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

④ 메라넷 (M-ERA.Net)



* 메라넷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"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"인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

4. 지원일정

① 유레카 네트워크 (Eureka Network)

구분		유럽 중앙사무국 일정	국내 일정			
		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일반 (Open Call, 자유주제)		~'26.9.30(수) 16:00 (CEST) (* 공고일 현재 유럽 접수 가능)	~'26.10.1.(목) 16:00 (KST) (* 공고일 현재 국내 접수 가능)	~'26년 4분기	'27년 상반기	'27년 하반기
주제별	경량화 (Lightweighting)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		'27년 상반기	'27년 하반기
	첨단바이오 (Advanced Biotechnology)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		'27년 상반기	'27년 하반기
국가별	한-프랑스 양자 (Korea - France Bilateral)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		'26년 하반기	

* 유럽중앙사무국 접수방법 : 과제접수 플랫폼(<https://eureka.smartsimple.ie/>) 가입 후, 영문연구개발계획서(Eureka Application Form)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

* 유럽중앙사무국 접수 후,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 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

② 유레카 클러스터 (Eureka Clusters)

구분	중앙사무국 접수 일정	국내 일정			
	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클러스터	5개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 참조	~'26.10.1.(목) 16:00 (KST) (* 공고일 현재 국내 접수 가능)	~'26년 4분기	'27년 상반기	'27년 하반기

<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>

클러스터	접수절차		접수일정
	접수	단계	
CELTIC-NEXT	연 2회	-	(1회차) '26.04.24(금) (CEST) 마감 (상세일정 영문 홈페이지 참조) (2회차) 미정,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
ITEA4	연 1회	1단계 (PO 접수) → 2단계 (FPP 접수)	(PO) '25.11.10(월) 17:00 (CET) 마감 → (FPP) '26.02.12(목) 17:00 (CET) 마감
SMART	연 1회		(PO) '26.01.22(목) 11:00 (CET) 마감 → (FPP) '26.04.27(월) 11:00 (CEST) 마감
EUROGIA2030	연 4회		(2026. 1회차) '26.04.30 17:00 (CEST) 마감 (상세일정 영문홈페이지 참조) (2026. 2/3/4회차) 미정,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※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,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
Xecs	연 1회		(PO) '26.01.22(목) 17:00 (CET) 마감 → (FPP) '26.04.16(목) 17:00 (CEST) 마감

③ 유레카 글로벌스타 (Eureka Globalstars)

구분	유럽 중앙사무국 일정	국내 일정			
	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일본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		'27년 하반기	

* 유럽중앙사무국 접수방법 : 과제접수 플랫폼(<https://eureka.smartsimple.ie/>) 가입 후, 영문연구개발계획서(Eureka Application Form)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

* 유럽중앙사무국 접수 후,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 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

④ 유로스타 (Eurostars)

구분	유럽 중앙사무국 일정	국내 일정			
	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Call 10	~'26.3.19(목) 14:00 (CET) (* 공고일 현재 유럽 접수 가능)	미정 ('26년 별도 안내 예정)			
Call 11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미정 ('27년 별도 안내 예정)			

* 중앙사무국 평가 결과 "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"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

⑤ 메라넷 (M-ERA.Net)

구분	중앙사무국 접수 일정		국내 일정			
	Pre-proposal	Full-proposal	접수마감	평가	평가결과 통보	협약체결
Call 2025	~'25.05.13(화) 12:00 (CEST)	~'25.11.19(수) 12:00 (CET)	미정 ('26년 별도 안내 예정)			
Call 2026	미정 (별도 안내 예정)		미정 ('27년 별도 안내 예정)			

* 중앙사무국 평가 결과 "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"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

5. 유의사항

○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관련 유의사항

- ①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의 국내 기관 연구개발비(Total Cost)는 국문 연구개발계획서의 총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 +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)와 동일하여야 함
- ② 유레카 사무국 접수는 국내외 각 기관이 과제접수 플랫폼(<https://eureka.smartsimple.ie/>) 가입 후, 1개의 영문연구개발계획서(Eureka Application Form)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각 기관이 전자 서명하여 제출
- ③ 유레카 사무국에 제출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파일(PDF 형식)로 내려받아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 (필수)

○ 과제 승인 확정 관련 유의사항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 제20조(선정평가 결과의 보고)에 의거하여,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국가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제안기관에 결과 통보함. (국내평가 결과만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하지 않음) 상대국 평가결과 도출이 지연될 경우, 국내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및 결과 통보도 순연됨.

* 평가결과는 국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유효, 유효기간 내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

6. 지원분야

- 산업 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

프로그램		지원 분야				
유레카 네트워크	일반	산업 쏠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	경량화	산업 쏠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	첨단바이오	바이오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	한-프랑스	산업 쏠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유레카 클러스터		CELTIC-NEXT	EUROGIA2030	ITEA4	Xecs	SMART
		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	저탄소·친환경 에너지	S/W 및 서비스	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	스마트 제조
글로벌스타		산업 쏠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유로스타		산업 쏠 분야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메라넷		별도 안내 예정 *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				

7. 프로그램별 홈페이지

프로그램		공식 홈페이지 (영문)
유레카 네트워크	일반	https://www.eurekanetwork.org/programmes-and-calls/
	주제별	
	국가별	
유레카 클러스터	ITEA4	https://itea4.org/
	CELTIC-NEXT	https://www.celticnext.eu/
	SMART	https://www.smarteureka.com/
	Xecs	https://eureka-xecs.com/
	EUROGIA2030	http://eurogia.eu/
유레카 글로벌스타		https://www.eurekanetwork.org/programmes-and-calls/
유로스타		https://www.eurekanetwork.org/programmes-and-calls/eurostars/
메라넷		https://m-era.net/

**전략기술형
국제공동연구개발
(Strategic Technology Joint R&D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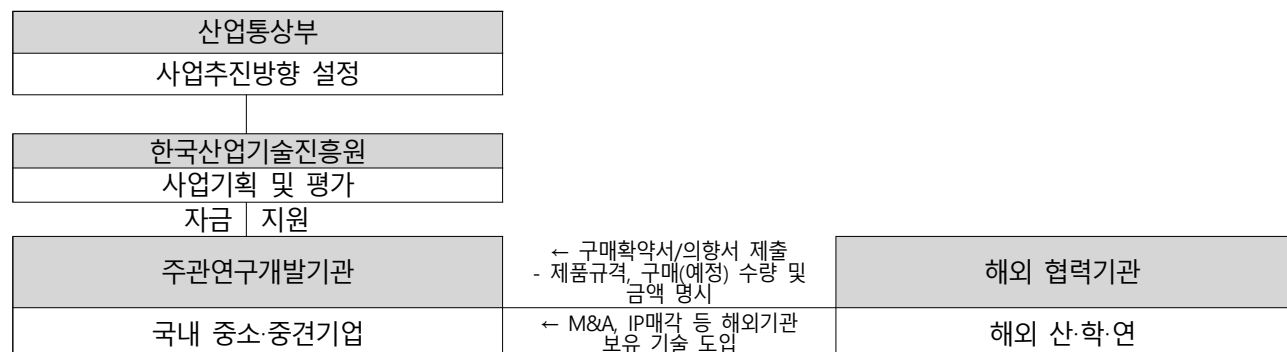
※ 지원규모, 기간, 분야, 추진체계,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

1. 지원규모, 기간 및 신청자격

구분	글로벌 수요연계형	글로벌 기술도입형
지원분야	6대 첨단산업분야(반도체/배터리/AI·로봇/미래모빌리티/디스플레이/바이오)의 사업화 R&D (TRL5~8단계) 지원	
지원대상	신제품 수출,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소중견기업 * 재직 인원 40명 이상이며 이 중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재직 인원이 8명 이상이고,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	
지원기간	3년	
지원규모	연간 10억원	
신청조건	직전년도 매출액 1억불 이상의 글로벌 해외기업으로부터 「기술개발 의뢰서」 또는 제품규격, 구매(예상)수량 및 금액이 포함된 구매의향서/구매확약서를 확보한 기업	최근 3년내 계약(IP도입, M&A, 지분 확보, JV설립)으로 해외 기술을 확보한 기업
연구개발기관	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제조업 중소중견기업 * 제조업 중 제외업종 가구, 가죽/가방 및 신발, 목재 및 나무제품, 식료품, 음료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, 펄프/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국내 산·학·연(선택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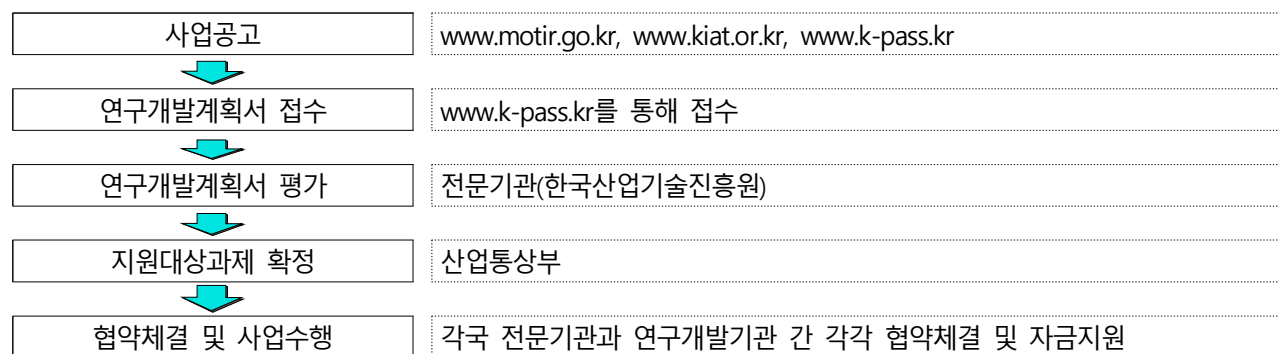
*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('26년 3월 공고 예정) 참고 필요

2. 사업 추진체계



*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('26년 2월말 공고 예정) 참고 필요

3. 지원 절차



4. 지원 일정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글로벌수요연계형	공고	평가	협약/Kick-off	성과확산
글로벌기술도입형	공고	평가	협약/Kick-off	성과확산

*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('26년 2월말 공고 예정) 참고 필요

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R&D (Global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&D)

※ 지원규모, 기간, 분야, 추진체계,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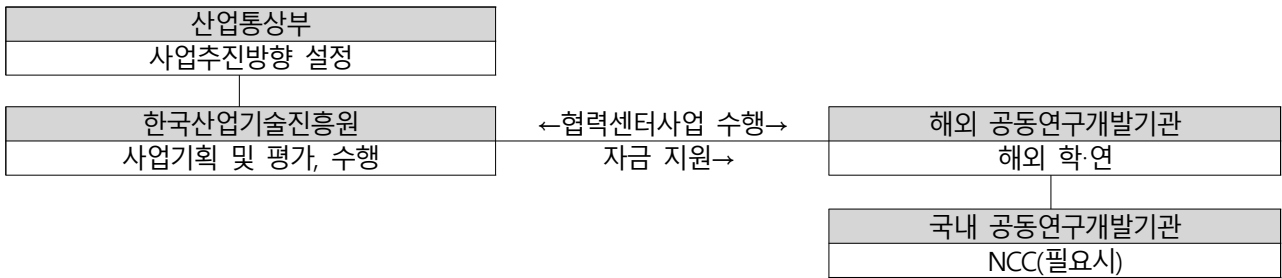
1. 지원규모, 기간 및 신청자격

구분		지원규모	지원기간	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	국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
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	협력센터	최대 30억	5년	KIAT (정책지정)	(해외) 비영리기관 (국내) NCC(필요시)
	공동R&D	20억원 내외/년	최대 5년	중소·중견·대기업	국내 및 해외 산·학·연 (협력센터 해외기관 참여 필수)

*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 참고 필요

2. 사업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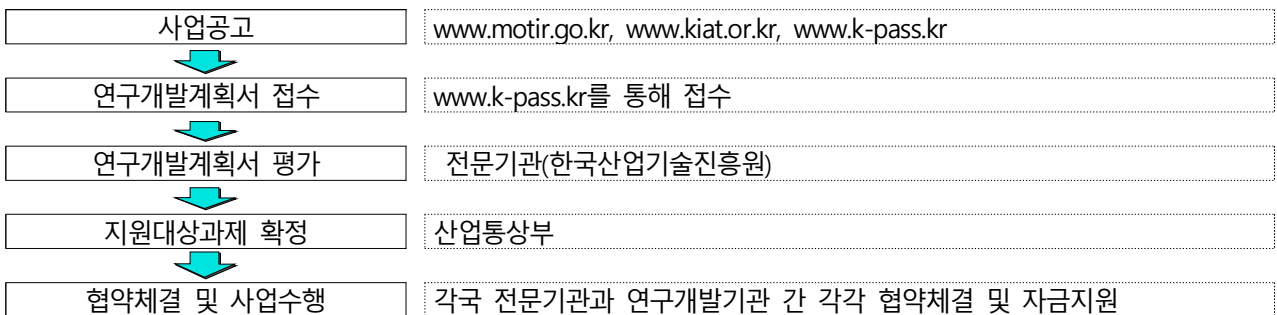
○ 협력센터



○ 공동연구 (R&D)



3. 지원 절차



*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 공고 시 안내

4. 지원 일정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(공동R&D)	공고	평가	협약	성과확산

*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 참고 필요

5. 지원분야 (별도 안내)

공통 사항

1. 지원대상(신청자격)
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)
-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“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”*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
 - 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
 -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“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”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

2. 지원조건

가.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

-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 -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(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)

나.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

연구개발기관 ¹⁾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²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% 이하
중견기업 ³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중소기업 ⁴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수요기업 ⁵⁾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* 전략기술 R&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

- 1) ‘연구개발기관’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
- 2) ‘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
- 3)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- 4) 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5) ‘수요기업’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

-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* 중,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로 할 수 있으며(과제 유형과 무관),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% 이하로 할 수 있음

* "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"이란,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6항 및 제8항,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, 제7조제4항,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"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"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(지정 기간에 한함)

-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

연구개발기관 유형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수요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그 외	필요시 부담

* 전략기술 R&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

-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는 위 표에서 '그 외'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
- 중견·중소기업이 'IV-3. 유의사항' 에서 정하는 '청년기본채용'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(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)을 신규채용 할 경우,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
 -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(대기업은 제외)
 -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,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.
 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(퇴사 등)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(전액 또는 부족액)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

3.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가. 기술료 징수

-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,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*(기술료 등의 납부)라 함
- *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에 대한 채투자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,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

나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

-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

다. 기술료 징수방식

-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, 전문기관의 장에게 「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」를 제출
- *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,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

라. 기술료 납부기준

- 직접실시의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- 제3자실시의 경우,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
구분		부과기준		요율	기술료 납부 상한
직접 실시	중소 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 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제3자 실시	중소 기업	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	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 기업	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	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*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

마. 기술료 납부기간

-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·발생한 매년 납부
-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
-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납부기한 변경 가능

4.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

-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
: <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51982>

5. 제한조건 (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)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, 관련 규정 등 적용

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

: <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14064>

순번	세부내용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-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개발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-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ntis.go.kr)의 “메뉴→과제참여·관리→유사과제”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정부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토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무사항 불이행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제한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-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,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- 접수마감일 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-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, 이 중 연구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- 단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*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 가능

7	<p>○ 중소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</p> <p>-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. 단,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0 448 1241 566"> <thead> <tr> <th>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(한계기업)</th><th>연구개발과제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견기업</td><td>4</td></tr> <tr> <td>중소기업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**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. 이때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</p> <p>**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,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(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)</p>	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(한계기업)	연구개발과제 수	중견기업	4	중소기업	2
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(한계기업)	연구개발과제 수						
중견기업	4						
중소기업	2						
8	<p>○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(RFP상 안전과제로 표시) 등</p>						
9	<p>○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,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</p>						
10	<p>○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</p> <p>* 온라인 시스템(K-PASS) 내 제출 후,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</p> <p>* 공고 마감 후 전산장애,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기간 연장,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</p>						
11	<p>○ 기타 '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' 및 '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' 상 사전제외,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</p>						

6. 근거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,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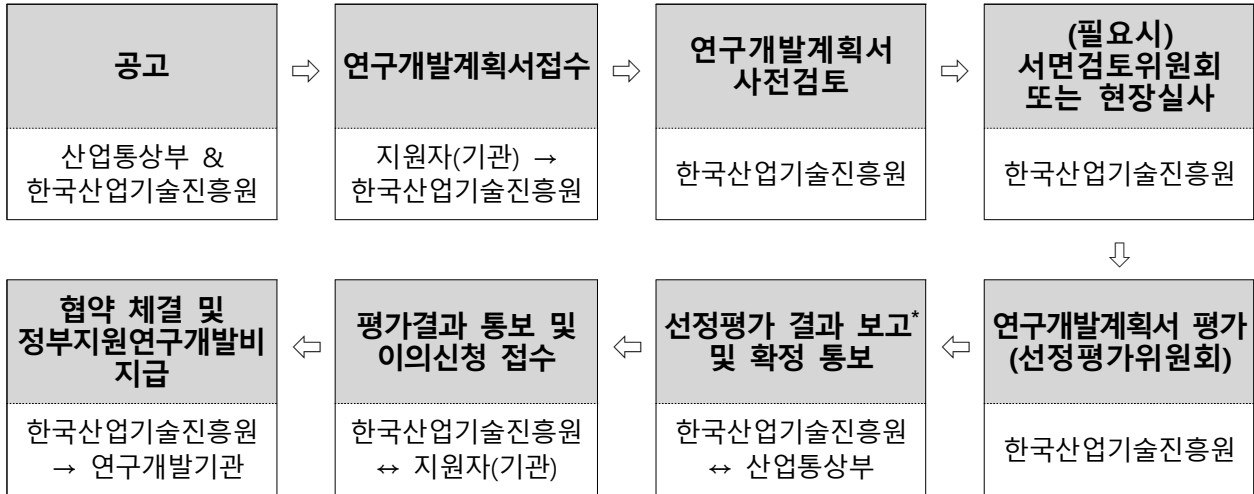
나. 관련규정 (www.k-pass.kr, 규정 및 서식)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,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 「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 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」, 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

II

평가 절차 및 기준

1.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



*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

*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-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'국제계약서(Consortium Agreement)와 '변호사 검토의견서'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 - * 양자공동편당형(한-스페인) 과제의 경우,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'국제계약서(양국 각각 제출)'와 '변호사 검토의견서(한국만 해당)'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,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
 - *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(변경)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(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)

2. 평가기준

○ 선정평가지표

평가지표		평가내용	배점
시장확대 가능성	기술개발의 필요성	○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(신시장 창출, 공급망 구축, 신기술 획득 등) (15) ○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(5)	20
기술전략의 타당성	개발목표의 명확성	○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(10) ○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(10)	20
	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	○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(10) ○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(5)	15
	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	○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(10) - 사업화 매출액(수출액 포함),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	10
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	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	○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(5) ○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(10)	15
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	사업화 전략의 타당성	○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(5) ○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, 경제적 기여도 (5)	10
	사회·경제적 파급 효과	○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(국내매출, 수출)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,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(5)	5
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	○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(5) -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정성	5
합계			100

*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별 상이

-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“지원대상”으로, 70점 미만일 때는 “지원제외” 과제로 분류함. 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- 유로스타 과제 :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“지원대상”으로 하되,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. 단,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,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- 메라넷 과제 :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“지원대상”으로 하되,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. 단,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,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
3. 유의사항

가.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&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R&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&D를 추진하는 경우 등
-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(시험, 테스트 등), 위탁과제 수행형
-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. 단, 외국파트너가 해외 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

나.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

-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또한 총괄연구책임자(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)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
- 단,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

다.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

-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, 연구비 유용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
라.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단, 연구개발성과의 유형,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·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,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. 다만,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

마. 청년기본채용 (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)

-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(채용시점 기준,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(1개월 미만은 올림)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) 참여연구자(이하 “청년인력”이라 한다)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)하고,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이 ‘청년기본채용’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(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)을 신규채용 할 경우,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

바. 안전관리형 과제

-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“안전관리형 과제”로 지정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‘과제별 안전관리계획’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-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: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(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)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
 - 대학, 국·공립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에 한함

사. 보안과제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* 국가핵심기술 :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
 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-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-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「대외무역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
-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.
 -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
 -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

※ (참고)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

-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·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
-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와 체결한 협정·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
-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
- ④ 재난·재해,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·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
-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

아. R&D 자율성 트랙

- R&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, 해당 과제가 R&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&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&D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에서 수시 신청
-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'80점'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'우수'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
-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(R&D자율성트랙 특례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
 -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

-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
 -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(부가세 포함)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
 - 연구개발비 내 비·세목 간 예산 변경
 -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
- 심의기준 등은 별첨(R&D자율성트랙 제도안내) 참조

III

신청방법 및 접수처

1. 신청 요령

- 신청 양식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iat.or.kr/>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(<https://k-pass.kr/>)의 공고 첨부파일 활용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류 제출 받지 않음)
 - 온라인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(<https://k-pass.kr/>)

[온라인 접수 절차]

- ① 통합회원 가입 :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필수
- ② 온라인 등록 :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, KIAT 과제관리시스템의 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
- ③ 파일 업로드 :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- ④ 접수확인증 출력 :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접수 완료 확인 가능

- *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(회원가입 필요)
- * 전산 등록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및 전화(문자 메시지)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,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수
- *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
- *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, 위.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* 온라인 시스템(K-PASS) 내 제출 후,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
- * **공고 마감 후 전산장애,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기간 연장,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**
- * **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**

2. (공동)제출 서류

- * 서류 유형별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(전산 업로드 시 유형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)

	서류 유형	파일형식	제출 대상기관	비고
1	국문 연구개발계획서	HWP	주관연구개발기관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2	영문 연구개발계획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	- 유레카 사무국에 접수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 제출

3	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(MoU) 또는 참여의향서(LOI) 등 -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*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전원이 필수 서명하여야 함
4	사업자등록증	PDF	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기업 제출 * 비영리기관은 제출하지 않음
5	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(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)
6	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,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* 영리기관의 경우, 참여연구자가 아닌 기관 대표자도 필수 서명하여야 함
7	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PDF	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* "연구전담부서 인정서"는 인정 안됨
8	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	
9	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10	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신청서 (해당시)	PDF	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11	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PDF	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를 PDF로 스캔한 파일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* 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스.코스닥) 미제출, 그 외 기업은 제출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) *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*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, 2026 도 결산이 안된 경우, 2025년도, 2024년도, 2023년도 자료 제출 가능)

○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

- 협력국,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
- 전략기술 R&D,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

IV

사업설명회 및 매치메이킹

1. 통합 설명회

구분	권역	일시	장소	주소
1	충청권	3.16.월, 13:30	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강당(212호)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
2	호남권	3.17.화, 13:30	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 본부동 1층 대강당	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
3	수도권	3.20.금, 13:30	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
4	대경권	3.23.월, 13:30	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2층 세미나실 201호	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
5	동남권	3.24.화, 13:30	한국전기연구원 본관동 1층 대강당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.

**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등록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세부 사업별 설명회 (미정,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)

- 양자 공동펀딩형 R&D 설명회
 -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, 질의응답 등
- 다자 공동펀딩형 R&D 설명회
 -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, 질의응답 등
- 전략형 R&D 사업 설명회
 -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, 질의응답 등
-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(GITCC) 사업 설명회
 -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, 질의응답 등

1. K-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(02-6009-4319, 4320, 4321)

2. 사업 내용 관련 문의

유형		한국측	상대국
양자간 공동편당형 R&D	독일	AiF 오애경 선임연구원 (02-6009-3763, aegyoung21@kiat.or.kr)	Christian Fichtner (AiF Projekt GmbH) +49-30-48163-590 C.Fichtner@aif-projekt-gmbh.de
		2+2 오애경 선임연구원 (02-6009-3763, aegyoung21@kiat.or.kr)	Carolin Lange (DLR Projektträger) +49-228/38-21-1423 C.Lange@dlr.de
	프랑스	김미현 책임연구원 (02-6009-3768, mihyun.kim@kiat.or.kr)	Camille Tang Taye Pinois (Bpifrance) +33(0)6 6336 3728 camille.tangtayepinois@bpifrance.fr
	영국	정영민 연구원 (02-6009-3769, wjddudals00@kiat.or.kr)	David Campbell-Molloy (Innovate UK) +44-07395360811 David.Campbell-Molloy@iuk.ukri.org
	스위스	정영민 연구원 (02-6009-3769, wjddudals00@kiat.or.kr)	Prabitha Urwyler (Innosuisse) +41-58-469-1767 prabitha.urwyler@innosuisse.ch
	스페인	우지현 연구원 (02-6009-3767, jeehyun.woo@kiat.or.kr)	Merced Pérez (CDTI) +34-91-581-5607 merced.perez@cdti.es
	체코	노하윤 연구원 (02-6009-3772, hyr@kiat.or.kr)	Katerina Feiglova (TA CR) +420-234-611-243 katerina.feiglova@tacr.cz
	네덜란드	이소현 연구원 (02-6009-3765, sy27@kiat.or.kr)	Mike Timmermans (RVO) +34-91-581-5607 mike.timmermans@rvo.nl
	덴마크	조홍래 책임연구원 (02-6009-3762, honglaecho@kiat.or.kr)	Thorbjørn Moth Gilberg (IFD) +45 6190 5000 thorbjoern.moth.gilberg@innofond.dk
	캐나다	노하윤 연구원 (02-6009-3772, hyr@kiat.or.kr)	Raida Omar (NRC) +604-8121971 raida.omar@nrc-cnrc.gc.ca
	싱가포르	우지현 연구원 (02-6009-3767, jeehyun.woo@kiat.or.kr)	Willard Ng (Enterprise Singapore) +65-9627-2879 willard_ng@enterprisesg.gov.sg
	미국	우지현 연구원 (02-6009-3767, jeehyun.woo@kiat.or.kr)	-
	이스라엘	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안현진 연구원 (02-2166-0816, haydenan@koril.org)	Talia Litvinov (IIA) +972-053-5746498 talia.l@innovationisrael.org.il
다자간 공동편당형 R&D	유레카	김미현 책임연구원 (02-6009-3768, mihyun.kim@kiat.or.kr)	
	유로스타	이소현 연구원 (02-6009-3765, sy27@kiat.or.kr)	
	메라넷	이소현 연구원 (02-6009-3765, sy27@kiat.or.kr)	
전략기술형 R&D	글로벌수요연계형	김은숙 책임연구원 (02-6009-3745, eskim@kiat.or.kr)	
	글로벌기술도입형	김은숙 책임연구원 (02-6009-3745, eskim@kiat.or.kr)	
글로벌산업기술 협력센터 (GITTC)	협력센터	윤소미 책임연구원 (02-6009-3741, ssomie81@kiat.or.kr)	
	공동연구	여인태 책임연구원 (02-6009-3744, intae119@kiat.or.kr) 최지만 선임연구원 (02-6009-3752, jiman5133@kiat.or.kr) 이소현 연구원 (02-6009-3749, esohyeon@kiat.or.kr)	

* 기타 문의 : 조홍래 책임연구원 (02-6009-3762, honglaecho@kiat.or.kr)